

학칙시행세칙 제59조(공결 및 병결) 일부 개정(안)

1. 제안이유

- 가. 대학학사제도과-908(2021.01.20.) 교육부 대학생 출산 공결제 관련 권고 사항 반영
 나. 질병에 의한 결석을 출석으로 인정하는 사항에 대한 정확한 근거 마련

2. 주요내용

- 가. 출산에 따른 결석 시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공결처리(출석인정) 관련 규정 마련
 나. 질병으로 인한 결석을 출석으로 인정하는 사항에 대해 정확히 명시

3. 신·구조문 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	비 고
제59조(공결 및 병결) ① (생략)	제59조(공결 및 병결) ① (현행과 같음)	
1~ 4. (생략)	1~ 4. (현행과 같음)	
5. 본인의 결혼으로 인한 결석은 5일간 인정	5. 본인의 결혼으로 인한 결석은 5일, <u>출산으로 인한 결석은 본인 20일, 배우자 10일까지</u> 인정	교육부 권고사항
6~ 7. (생략)	6~ 7. (현행과 같음)	
8. <u>기타 총장이 부득이 하다고 인정하는 경우</u>	8. <u>질병 또는 사고에 의한 결석은 증빙자료를 제출한 경우 해당기간을 출석으로 인정</u>	신설
<신 설>	9. 기타 총장이 부득이 하다고 인정하는 경우	8호→9호 변경
② (생략)	② (현행과 같음)	

4. 참고자료

- 출산 공결제 관련 근거
 : 대학학사제도과-908(2021.01.20.) 「제2차 청년의 삶 개선방안 관련 권고사항 안내(대학생 출산 공결제 관련)」

모든 아이는 우리 모두의 아이입니다.



교육부

수신 수신처참조
(경유)

제목 제2차 청년의 삶 개선방안 관련 권고사항 안내(대학생 출산 공결제
관련)

1. 관련

- 가. 국민생활 밀착형 일괄 제도개선 의결(국민권익위원회, '20.4.20.)
- 나. 제2차 청년의 삶 개선방안(국무총리 청년정책조정위원회, '20.9.18.)

2. 최근 출산 장려를 위해 각종 지원 정책을 추진하고 있는 상황에서, **본인 및 배우자 출산에 따른 결석 시 공결처리 되지 않아 불이익이 발생되지 않도록** 각 대학에서는 출산 관련 공결 처리 제도 및 절차를 마련하도록 권고합니다.

붙임 제2차 청년의 삶 개선방안 1부. 끝.

[붙임 “제2차 청년의 삶 개선방안” 에서 관련 내용 발췌]

5. 참여·권리 분야

❖ 대학생, 일학습병행 근로자, **군 의병제대자** 등에 대한 권리 보호 강화

41 대학생 출산 공결제 도입 (교육부, 신규)

<현황>

- 대학생 **본인이나 배우자가 출산하는 경우에도 일부 대학에서는 결석**으로 처리하는 경우가 있어 학생 불편 야기

<개선>

- 전 대학교(국공립, 사립)에서 **대학생 본인이나 배우자가 출산하는 경우 공결로 인정하는 규정** 마련 권고('20.하)